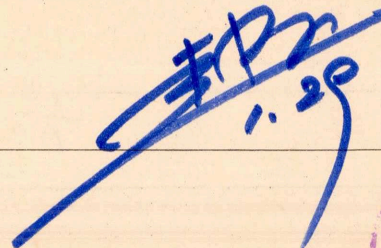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공원23200-57	(전화: 273-3762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	
시행일자	90. 1.		
보조 기관	환경독자극장 공원과장 공원관리계장		
기안책임자	(이도형)	발 송 인	
경유 수신 참조	각안참조	발신명의	시 장
제 목	사직공원에 수영장 강제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		
	(제1안)		
수신:	내부결재		
제 목:	등 기		
	1. 공원23200-590 (89. 11. 18) 호와 관련된,		
	2. 위호와 관련 사직공원에 위락관리 수영장 강제		
	철거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		
	합니다.		
	가. 사건번호 및 사건명 : 89 다카028102 손해배상		
	나. 사건당사자 : 원고 : 최병목 30		

과고 : 서울특별시

나. 소송결과 : 원고의 상고 허가 신청 기각.

라. 판결일 : 90. 1. 12

마. 항후추천사항 : 소송비용 회수 조치.

첨 부 : 판결문 사본 1부. 끝.

(제2안)

수 신 : 종 료 구 청 장

참 조 : 공원녹지 과 장

제 목 : 같 은 건

1. 공원 23200-590 (89. 11. 18) 호 와 관 련 임,

2. 위 호 와 관 련 사 직 공 원 내 수 영 장 강 제 철 기 에 따 른

손 해 배 상 청 구 소 송 사 건 이 별 첨 판 결 문 과 같 이 승 소 확 정

되 었 으 니 개 소 자 료 부 터 소 용 비 용 회 수 에 만 전 을 기 하 도 록 하 기

바 람,

첨 부 : 판 결 문 사 본 1 부,

송 무 용 전

수 신 공 인 과장 1980.1.19.

사 건 명 주택배상(기)
사건번호 89다가810 원고 (신정문) 처 항우
피고 (이생영인) 서울시

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

적 기 사 항

- 1. 소방침 결정 년 월 일 까지
- 2. 소송대리인 및 년 월 일 까지
소송수행자 지명의뢰
- 3. 증거 제시 년 월 일 까지
- 4. 증인 신청 년 월 일 까지
- 5. 기 일 년 월 일

첨보: 신정문 (勝) 사본 본
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
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 항우
가장입니다.

법 무 담 당 관 김무

대 법 원

제 3 부

결 정

사 건 89다카 28102 손해배상(기)

원고, 신청인 최 병 옥(崔秉玉)

서울 종로구 사직동 1의 48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, 경수근, 전재중, 최성근

피고, 상대방 서울 특별 시

대표자 시장 고 건

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. 9. 22. 선고, 88나 47842 판결

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.

1990. 1. 12.

재판장 대 법 관 박 우 등

선 결					
접수일시 37	1990. 1. 11	시 본	10	경정재 (용담)	
처리과					

대 법 관 이 제 성 _____

대 법 관 윤 영 철 ____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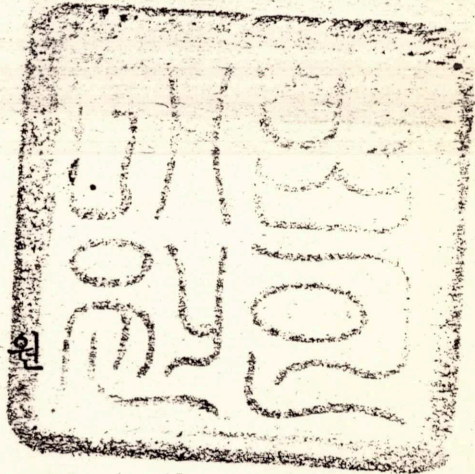
대 법 관 김 용 준 _____

정본입니다.

19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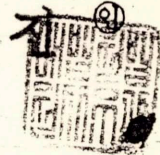
1990. 1. 15

대 법



법원사무관

청 병



민소 151 ②

주 : 이 정본에는 법원의 인을 찍을 것

038

35137

서 약 서

정리번호

사건번호 : 89다가28102

사건명 : 손해배상(기)

원 고 : 최 병 옥

피 고 : 서울특별시

소직은 위 사건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
말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추
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
서약 하나이다

1989년 11월 일

서약자

소 속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장 유 금

직 명 " 공원관리계장 유 락 준

성 명 " 자량민생지원 김 양 수

서울특별시청 공원과 자량민생지원 처 도 행

서울특별시청 귀하

(서명 날인하여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것)